##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6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김동아·허성무·임호선

박균택 • 추미애 • 김남근

김영호 · 박정현 · 이정문

김문수 · 허종식 · 한준호

김준혁 · 정준호 의원

(14위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,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,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 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52조).

법률 제 호

##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기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상표전문기관의 등	록취소 제52조(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
	취소된 전문기관은 등록이 취
	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
	시 등록을 할 수 없다.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